

## 미국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특징 및 규제체계

◆ **(미국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미국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는 국내 서비스와 유사하게 은행계좌,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과 연결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물품 구매** 또는 **송금**에 이용할 수 있음\*

\* 본인 소유 휴대전화번호가 있으면 계정을 개설하여 수수료 없이 개인간 송금, 물품 구매를 이용할 수 있는 Venmo 등이 미국의 대표적인 간편결제·송금서비스

◆ **(미국과 우리나라의 간편결제·송금 관련 규제체계)**

	미국	우리나라
간편결제·송금 업무 관련 규율	「전자자금이체법」과 「Regulation E」를 통해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도 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감독 등을 규정
인허가	각 주별로 운영중인 「송금업법」에 따라 면허 발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고객자금에 대한 운용제한	고객자금의 운용가능 금융상품을 안전자산 위주로 제한하는 조치를 각 주별로 다르게 적용	고객자금을 간편결제·송금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신탁하고 이를 안전자산으로 운용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에 예치된 고객자금 보호	고객정보가 등록되고 고객별 예치액이 확인되는 등 FDIC의 요건을 충족한 고객자금에 대해서는 고객별로(25만달러) 예금자보호 적용	금융기관에 고객자금을 예치한 선불업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적용(5천만원)
자금세탁방지	고객신원 확인, 거래정보의 보관, 의심거래 보고,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적용	고객확인 의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 등을 이행

◆ **(시사점)** 미국과 우리나라의 **간편결제·송금**은 서비스 구조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융당국**의 대응 방향도 유사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간편결제·송금 동향** 및 **규제당국**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

- 간편결제·송금업체가 은행 등에 예치한 **고객자금**에 대해 **고객별로 예금자보호를 적용**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을 예치한 간편결제·송금업체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적용

작성자: 금융결제국 결제혁신연구팀 박기범 과장(02-750-6636)

**I****검토배경**

□ 모바일기기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는 **많은 국가**에서 **보편화**되고 있음

○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IT에 전문성**을 보유한 **비금융기업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서비스 분야**로 적극 **진출**

○ 국내에서는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이후 각종 ‘페이’, ‘머니’ 등 간편결제·송금이 크게 활성화

○ 미국의 경우 Apple의 ‘Apple pay’, Paypal의 ‘Venmo’ 등이 대표적인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이며, Venmo의 경우 ‘Venmo me’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널리 활용\*\*

\* ‘Venmo me’는 ‘Please send me money using Venmo’를 줄인 관용적 표현으로 타인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의 뜻으로 사용

\*\* 미국 ‘Consumer Report Survey Group’이 실시한 P2P 지급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2023.1)에 따르면, 미국인의 69%가 P2P 지급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5%는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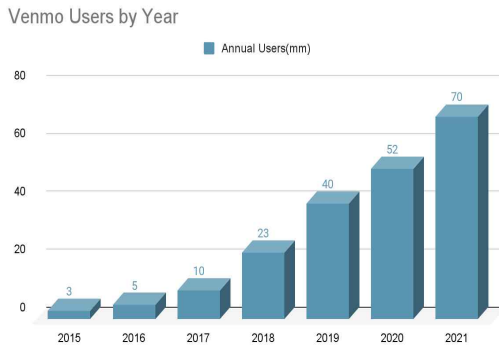
⇒ 미국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현황**과 관련 **규제 체계**를 Venmo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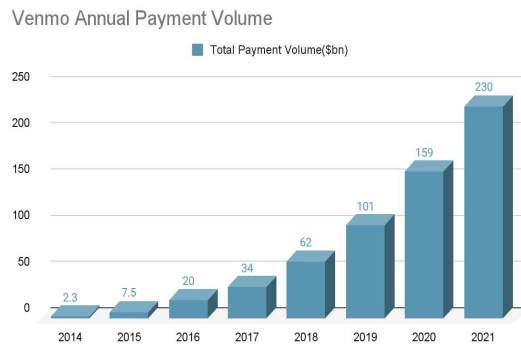
## 미국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현황 - Venmo 사례

- Venmo는 2009년 미국에서 사용자 간 수수료 없이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송금서비스를 시작하여 약 7천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서비스로 성장
  - Venmo는 2013년 페이팔에 인수되어 현재는 페이팔이 서비스를 운영

### Venmo 이용자수



### Venmo 이용액



자료: Business of Apps, 'Venmo Revenue and Usage Stats 2023'

-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번호**가 있으면 **Venmo 계정\***을 수수료 없이 **개설**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선불충전금과 유사

- Venmo 계정을 이용한 송금 및 물품구매를 위해서는 **은행계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와 **연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

\* Venmo를 이용해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개인용 계정이 아닌 비즈니스용 계정으로 등록 필요

□ 이용자는 **Venmo 계정을 통해** 다른 Venmo 이용자에게 돈을 **송금** 할 수 있고, Venmo 계정의 잔액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인출**할 수 있음

○ **Venmo 계정**에 있는 **잔액\***을 다른 Venmo 이용자에게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으며, Venmo는 해당 금액만큼을 **송금인의 Venmo 계정**에서 **차감**하고 **수취인**의 계정에 **증액** 처리(그림①)

\* Venmo 계정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이 사전에 Venmo에 연결한 은행계좌, 직불카드 등을 이용해 송금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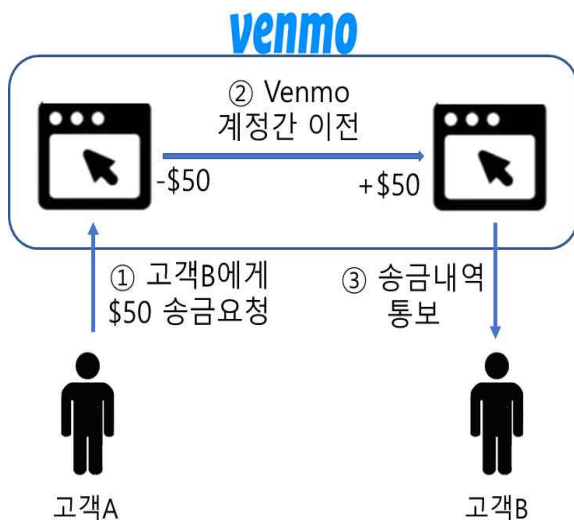
○ 고객은 **Venmo 계정**의 잔액을 **수수료 없이** 자신의 **은행계좌로 옮겨\*** 인출할 수 있음\*\*(그림②)

\* 우리나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선불충전금 환급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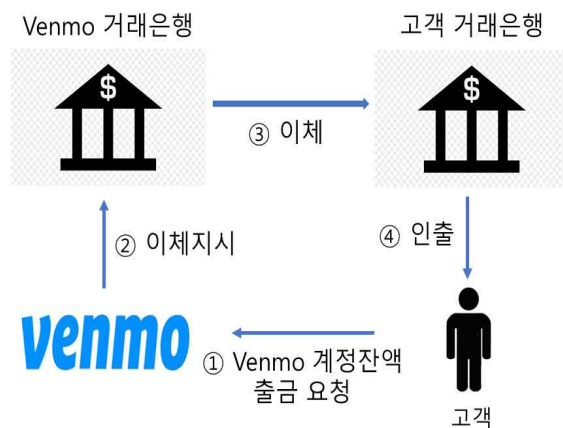
\*\* Venmo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고객 거래은행으로 이체가 ACH(Automated Clearing House)를 통해 처리됨에 따라 고객은 익영업일에 자금을 수취(Standard Transfer)

고객이 자금을 즉시 수취하기 원할 경우 1.75%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해 30분 이내로 처리가 완료(Instant Transfer)

① Venmo 계정을 통한 송금



② Venmo 계정잔액의 출금



### Ⅲ

## 미국의 간편결제·송금 관련 규제 체계

### 1 간편결제·송금 업무에 관한 규율

- (「전자자금이체법」 및 「Regulation E」) 미국은 「전자자금이체법(EFTA)」과 「Regulation E」를 통해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사항도 규정\*

\*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은 전자자금이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고 예방 및 피해보상 등 전자자금이체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법이며,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담당

# 「Regulation E」에 대한 권한은 과거 연준이 보유하였으나, 여러 감독기구에 분산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해 신설된 CFPB로 권한이 이관됨(2011년)

- Venmo 등 비은행 P2P 지급서비스 제공업체 및 이들의 서비스도 「전자자금이체법」과 「Regulation E」의 규율 대상

— CFPB는 P2P 지급이 ‘수표, 물리적 카드, 실물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 타인에게 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고객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고객에게 전자자금이체를 제공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발급한 P2P 업체는 「전자자금이체법」과 「Regulation E」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접근매체(Access device)는 소비자가 전자자금이체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코드, 소비자 계정에 대한 수단 또는 이들의 조합

- (국내의 전자금융거래 규율)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업자의 의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감독 등을 규정

## 2 인허가

- (송금업법에 따른 면허 발급) 미국의 **간편결제·송금업자**는 각 주별로 운영중인 「**송금업법**(Money Transmitter Act)\*」에 따른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각 주별로 「송금업법」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Money Transmitter Act」라는 명칭을 사용

\*\* 「송금업법」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주별로 면허내용 및 면허 발급요건이 조금씩 달라 주별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송금업자 면허 취득이 가능

-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발급에 재무적 요건, 보증·보험요건, 고객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 금융당국이 송금업자 면허를 발급하고 송금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금융법(California Financial Code Division 1.2, Section 2000~2176)」을 통해 송금업과 면허에 대해 규정하며 송금업 면허 발급 및 관리와 감독은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 DFPI(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 Innovation)에서 담당  
캘리포니아 주 송금업자는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상품(Stored Value, 우리나라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의 발행업, 자금송금업이 가능

- Venmo 서비스의 운영사인 페이팔은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송금업자 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이며, Venmo는 페이팔의 면허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 (전자금융업자 등록) 국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이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10억원 이상 등

- 국내 대표적인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고지결제업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 3 고객자금 보호

□ (고객자금에 대한 운용제한)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간편결제·송금업자가 보관하는 고객자금에 대해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안전자산 위주로 제한하고 있음

\*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연방법에서는 고객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가 없음. 각 주별로는 고객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각각 다르며#, 일부 주에는 운용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예: 캘리포니아 주 「송금업법」은 수취한 고객자금에 대해 송금 또는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자금의 100% 이상을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 예금,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등으로 보유하도록 규정

○ Venmo는 고객자금을 회사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자 약관을 통해 안내

□ (고객자금의 예금자보호) 선불지급수단에 충전된 고객자금에 대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예치된 경우 예금자보호(Pass-through Insurance\*)를 적용

\* 선불계정의 고객자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선불지급수단 발행업자가 아닌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 (업자의 파산 시에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 예치된 자금을 대해 사전에 고객정보가 등록\*되고, 고객별 보유자금의 내역이 FDIC에 제공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별로 예금자보호(25만달러 한도)를 적용\*\*

\* 선불지급수단 발행업자는 고객에게 선불계정의 소유권 입증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선불계정 고객자금의 예금자보호 요건 충족 여부를 고객에 알려야 함(「Regulation E」 12 CFR 1005 18(b))

\*\* FDIC는 금융기관 파산 시 신속하게 예금보호대상을 확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평상시에 선불계정을 포함한 각 예금의 예금자 신원과 각 예금자별 예금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

- 선불지급수단 발행업자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제휴 직불카드 발급 등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예금자보호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
- 한편, CFPB는 주요 간편결제·송금업체의 이용약관에도 고객자금의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평가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

###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불계정 고객자금보호

	미국	우리나라
고객자금에 대한 운용제한	각 주별로 고객자금에 대해 운용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를 다르게 규정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
고객자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 (국내의 고객자금 보호) 선불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함

\* 현재 선불업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자금을 원칙적으로 외부신탁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3.8.24.) 다만, 개정 「법」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구체적 비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의 금액을 신탁,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가이드라인에 비해서는 기준이 완화

\*\* 국채, 정부보증채, 은행 예금, 특수채 등



- 선불업자가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고객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파산 등 발생 시 **자금을 예치한 선불업자**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됨에 따라 개별고객의 자금이 안전하게 반환되지 못할 수 있음\*

\* 간편결제·송금업체의 파산이 아닌 금융기관의 파산 시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미국과 동일

#### 4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방지 사항 준수) 미국의 **간편결제·송금업자**는 자금서비스업(Money Services Businesses, MSB) 제공업자에 해당되어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FinCEN은 여행자수표, 우편환, 가치저장수단의 발행, 판매 및 상환(Issuer, Seller, Redeemer of traveller's checks, money orders or stored value), 송금업(Money transmitter) 등을 제공하는 경우 MSB에 해당한다고 정의

- 고객 신원의 확인, 거래정보의 보관, 의심거래 보고,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해야 함

- (국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자금융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고객 확인 의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 등을 이행해야 함

\*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거래가 추가됨 (2019.7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IV

## 시사점

-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활성화 초기에는 서비스의 편의성, 혁신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선불지급수단의 고객자금이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고객별 예치액이 확인될 경우 고객별로 예금자 보호를 적용
  - 우리나라에서는 선불업자의 고객자금을 외부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고객자금 보호를 강화
    - \* 현재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객자금을 외부신탁하고 있는데, 2023.8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신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됨
- 미국과 우리나라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는 양국에서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한 가운데 서비스의 구조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강화 등 규제 방향성도 유사함에 따라, 향후 미국 금융당국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
  - 한편, 간편결제·송금업체가 은행 등에 예치한 고객자금에 대해 고객별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2020.9
-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0-3호), 2020. 8, 한국은행
- 안수현, “해외 주요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및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2019. 11. 26, ‘국회입법조사처’
- 오지윤, 최원영, “4월중 국내외 빅테크·핀테크 산업 Bulletin”,  
금융안정 업무정보, 2023. 5. 17, 한국은행
- 이병렬, “한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제도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제1호), 2009. 3. 27
- 황순주, 202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KDI정책포럼」 제286호(2022-01), 2022. 4. 12, KDI
- Consumer Report Survey Group, “ Peer-to-Peer Payment Services  
Surveys on This Topic From Four Months of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American Experience Survey Across 2022”, 2023.1. 10
- Business of Apps, “Venmo Revenue and Usage Stats 2023”, 2023. 2.  
13, <https://www.businessofapps.com/data/venmo-statistics/>
- CFPB, press release, “Consumer Advisory: Your money is at greater  
risk when you hold it in payment app, instead of moving it to  
an account with deposit insurance.”, Consumer Advisory, 2023. 6.  
1, CFPB,
- CFPB, Electronic Fund Transfers FAQ, 2021. 12
- CFPB Office of Competition and Innovation and Office of Markets,  
“Analysis of Deposit Insurance Coverage on Funds Stored  
Through Payment Apps”, ISSUE SPOTLIGHT, 2023. 6. 1, CFPB
- FDIC, Is the Money on My Prepaid Card FDIC-Insured? 2019.9
- Thomas Brown, “50-State Survey: Money Transmitter Licensing  
Requirements,”
- Venmo, “Venmo User agreement”, 2023. 7,  
<https://venmo.com/legal/us-user-agreement/>